

데이케어 (Day Care) 사업 시작 방법

본 안내 자료는 데이케어 센터를 여는 데 필요한 정보와 리소스를 담고 있습니다.

뉴욕 시에는 돌봄 대상 아동의 나이와 수에 따라 다섯 가지 종류의 탁아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기 다른 다섯 가지 종류 시설간 차이점과 필요 사항을 요약한 표입니다.

유형	아동 수	아동의 나이	규정	담당 기관	검사
그룹 데이케어 (Group Day Care)	7 명 이상	출생부터 6 세	<u>연허</u> 뉴욕 주 보건법 제 47 조 (Article 47 NYC Health Code)	뉴욕시 보건과 데이케어국 (Bureau of Day Care)	보건과 의무 사항
취학 연령 아동 케어 (School-Age Child Care)	7 명 이상	5 세부터 13 세	<u>등록</u> 뉴욕 주법 파트 414 (Part 414 State Code)	뉴욕 주 뉴욕시 보건과 데이케어국	보건과 20% 무작위 샘플 100% 물리적 시설
그룹 가족 데이 케어 (Group Family Day Care)	7 - 12 명	6 주부터 12 세	<u>연허</u> 뉴욕 주법 파트 416 (Part 416 State Code)	뉴욕 주 뉴욕시 보건과 데이케어국	보건과 의무 사항 100% 신규 사업자
가족 데이케어 (Family Day Care)	3 - 6 명	6 주부터 6 세	<u>등록</u> 뉴욕 주법 파트 417 (Part 417 State Code)	뉴욕 주 뉴욕시 보건과 데이케어국	보건과 20% 무작위 샘플 + 취학 연령
비정식 케어 (베이비시팅)	1 - 2 명	연령 무관	<u>없음</u>	뉴욕 주 뉴욕시 보건과 데이케어국 (불만 신고에 한해)	불만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보건과에서 주의 방문 실시 (법집행은 없음)

법적 요건 개요

뉴욕 시 보건과 (DOH)는 최대 6 세까지 아동의 건강, 안전 및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가정 이외 장소에서 그룹 단위로 이루어지는 돌봄(케어)을 규제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뉴욕시 보건법 (Health Code)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과의 데이케어국 (Bureau of Day Care)이 집행합니다. 6 세까지 아동을 7 명 이상 돌보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보건과의 데이케어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케어 서비스의 경우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발급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보건과의 데이케어국에서 발급 절차를 안내 및 지원해 드립니다.

법 규정은 다음 항목에 대해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공간, 설비
- 프로그램/그룹 규모
- 교사/아동 비율
- 교육 담당 직원 및 디렉터의 교육적 배경
- 직원 및 아동들의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일정
- 식품 서비스
- 출입 방침
- 교통

또 아래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데이케어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신원 확인에는 일체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지문 채취, 뉴욕 주 아동 학대 중앙 등록처(New York State Central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Register) 확인 문의, 가장 최근 고용주 세 곳에 문의해 추천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해당 시설에는 소방과, 건축물과 및 보건과의 서면 승인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행

데이케어국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데이케어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보건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해야 허가가 발급 또는 재발급됩니다.

한 눈에 살펴보는 면허 발급 절차

단계 1	해당 보로우(borough) 사무소(아래 참조)에서 진행되는 예비 세션에 참석합니다.
단계 2	데이케어 시설에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면 사무소에 연락해 PHS 검사를 받습니다.
단계 3	예비 계획서/설계도면을 제출해 데이케어 사무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단계 4	납 테스트 검사 보고서(Lead Test Inspection Report)를 받습니다 – 반드시 XRF 방법을 사용합니다.
단계 5	건축물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점유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 또는 6 세 미만 아동들의 경우 동의서[Letter of No Objection]).
단계 6	데이케어 사무소를 통해 소방과 점검을 요청합니다(아동 수가 30 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화재 경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아/유아 대상 시설인 경우 분무 장치가 필요합니다).
단계 7	아동 1 명당 한 쪽 벽에서 다른 쪽 벽까지 교실 공간이 30 평방피트 있어야 합니다. 나이와 그룹 규모 한도를 감안합니다.
단계 8	아동 15 명당 아동 크기 화장실(마감 처리 바닥에서부터 10-12 인치) 한(1) 곳과 아동 크기 싱크대(마감 처리 바닥에서 22-24 인치) 한(1) 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9	시설 내에 별도의 직원용 화장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장애인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10	면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유아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격 교육 담당 디렉터 또는 교사 디렉터 • 유아격 교사 • 보조 교사
단계 11	직원의 신원 확인을 실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과의 지문 채취 • 아동 학대 이력 확인 • 추천서 3 부
단계 12	직원 및 아동들에 대해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단계 13	면허를 발급 받기 전에 모든 PHS 위반 사항을 시정합니다.
단계 14	적절한 신청서 양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단계 15	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보건과는 데이케어 센터 개업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유아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합니다.

뉴욕시 보건국 데이케어국(메인 오피스: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Bureau of Day Care - Main Office)

전화번호: 311

TTY 번호: (212) 504-4115

홈페이지: <http://www.nyc.gov/html/doh/html/dc/dc.shtml>

후원금/지원금

데이케어 운영자는 지원금 수령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또는 취학 연령 아동 케어 프로그램을 시작 또는 확장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경우, 아동 & 가족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SF)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OCSF 아동 관리 전문가 유지 프로그램(OCSF Child Care Professional Retention Program):

홈페이지: <http://www.ocfs.state.ny.us/>

데이케어 리소스 참조

아래에 나와 있는 데이케어 관련 리소스를 방문하시면 사업 시작 시 자금 조달, 프로그램 설계, 소개, 보험, 예산 수립, 기록 관리 보관, 구역 지정, 아동 및 성인 관리 식품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hild Care, Inc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inc.org/>

Child Development Support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cdscnyc.publishpath.com/>

Asian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of the 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cpc.org/>

Committee for Hispanic Children & Families

홈페이지: <http://www.chcfinc.org/>

Day Care Council of New York, Inc. Website: <http://www.dccnyinc.org/>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of East New York

홈페이지: <http://www.eastbrooklyn.org/>

Business Outreach Center Network, Inc. 홈페이지: <http://www.bocnet.org/>